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68

발의연월일: 2025. 3. 5.

발 의 자:조승환·김승수·안철수

이성권 • 인요한 • 김성원

김태호 · 임이자 · 최은석

나경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질문·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관계자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발생하였고,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·직원의 위법한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규제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,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0조의2(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직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죄)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·직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260조의2(각급선거관리위원회
	위원ㆍ직원의 위법한 직무수행
	죄)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
	원·직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
	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
	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
	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
	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
	<u>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